

## 독립손해사정사의 보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dependent Claim Adjuster Fee)

양희영\*  
Hoeyoung, Yang

###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현행 보험회사 위탁 손해사정과 독립 손해사정의 보수기준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시 저가보수 체계는 보수의 적정성 분쟁과 불공정 계약 등의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위탁 손해사정사의 부실한 손해사정으로 이어짐으로써 적정보험금 산출에 악영향을 입히고 종국에는 보험소비자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 한편 위탁 손해사정사와는 달리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 손해사정사는 오히려 과다 보수 수수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손해사정 시장에서의 이러한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손해사정 보수기준을 살펴보고, 보수기준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보수기준이 필요하다면 타 자격사들과 형평에 맞추어서 어느 정도 어떤 형식의 보수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한지, 신체손해사정사의 경우 어느 정도 관행적으로 손해사정보수가 실무에서 적용되고 있는데, 재물손해사정사의 경우 과다 경쟁으로 덤핑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러한 보수기준을 새로 갖출 것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 국문 주제어 : 손해사정사, 독립손해사정사, 보수, 보수기준, 독립손해사정사보수

\* 전주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겸임교수, 금융보험학박사

투고일: 2024. 04. 10. 심사일: 2024. 04. 17. 게재확정일: 2024. 04. 25.

## I. 머리말

우리나라 손해사정사 제도는 2024. 2. 6. 보험업법의 일부 개정(시행 2024. 8. 7.)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법제처에서 발표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 손해사정 관련 내용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 대한 준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며, 보험회사 및 법인인 손해사정업자가 소속 손해사정사에게 손해사정에 관한 교육을 하도록 하고, 손해사정업자의 공시의무, 손해사정업무에 관한 과대·허위의 표시·광고금지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 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보험업법 제185조 4항을 신설하여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였다. 그 주요 신설 내용 중 1호에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 선정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업무위탁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할 것” 이라고 명시함으로써 보수기준에 대해 보험회사와 위탁 손해사정업자 간에 협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다만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하는 손해사정사의 경우는 보험업법상 기준을 만들 명문 규정이 없다는 맹점이 있다.

보험업법 제185조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에게 손해사정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험업법 제185조 2항에 따르면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고 보험회사에 알리는 경우 보험회사는 그 손해사정사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손해사정사 선임에 관한 동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보험업 감독규정 제9-12조(손해사정사의 구분)에 따르면 손해사정사를 그 업무수행 형태에 따라 1. 고용손해사정사 : 보험회사에 고용된 손해사정사 2. 독립손해사정사 : 보험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독립하여 손해사정을 업으로 영위하는 손해사정사” 라고 규정하고 있고, 보험업 감독규정 9-16조(보험계약자 등

의 손해사정사 선임)에 따르면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피해자·그 밖에 보험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 들은 보험회사와 별개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에 고용된 고용손해사정사 그리고 독립손해사정사로 구분할 수 있고, 독립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아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위탁손해사정사<sup>1)</sup>와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하는 손해사정사로 구분할 수가 있으므로, 이 논문에서는 편의상 손해사정사의 종류를 보험회사에 고용된 고용손해사정사, 보험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손해사정사,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와 별개로 선임하는 독립손해사정사로 구분하도록 하며, 위탁손해사정사는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와 위탁손해사정업체 간에 업무위탁기준을 마련하여 보수를 정할 것으로 보이므로 따로 논하지 아니하고, 이 논문에서는 보험계약자 등이 별개로 선임하는 독립손해사정사 보수기준의 제정방안에 대해서만 살펴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다른 전문가자격사 보수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고 보수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수기준이 있으면 그 실효성 여부, 보수기준을 마련한다면 어떤 방식이 좋을 것인지를 살펴봄으로써 합리적인 적정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II. 다른 자격사의 보수 기준

### 1. 변호사

대법원규칙인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에 따르면 “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 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이하 ‘지급보수액’ 이라 함)의 범위

1) 위탁 손해사정사는 보험업법상 독립손해사정사이기는 하나 보험회사의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독립손해사정사는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하는 손해사정사로 정의함이 분류상 편할 수 있다.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의 경우 별도로 위임자와의 관계를 규정한 수수료 체계는 따로 없어서 변호사의 공적인 보수규정은 없는 것으로 해석함이 맞다. 다만,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실제 계약 내용과 달리 소송이 끝났을 때 승패에 따라서 소송비용을 분담하는 문제에서의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음으로써 독립손해사정사의 보수기준을 정함에 이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는 것은 유의미하므로 이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표 1>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 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   | 소송에 산입되는 비율 또는 산입액 |
|--|--------------------|
| 300만원까지 부분   | 30만원               |
| 300만원을 초과하여 2,000만원까지 부분<br>〔3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300만원) × 10/100〕      | 10%                |
|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의 부분<br>〔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 8/100〕 | 8%                 |
|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의 부분<br>〔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 6/100〕     | 6%                 |
| 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의 부분<br>〔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 4/100〕          | 4%                 |
|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의 부분<br>〔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5천만원) × 2/100〕       | 2%                 |
|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의 부분<br>〔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 1/100〕           | 1%                 |
|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br>〔1,3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 0.5/100〕                | 0.5%               |

## 2. 법무사

법무사법 제19조(보수) 제1항에 의하면 “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그리고 제2항에서 “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 외에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위임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못한다.” 또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기준을 협회가 정하게 되어 있다.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에 정한 법무사의 보수기준표에 의하면, ① 법무사의 보수는 기본보수, 가산보수, 기타 보수 및 비용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보수는 업무·사건의 종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가액 및 법무사의 업무 부담과 책임 범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를 말한다. 다만, 경제적 이익의 가액이 없거나 이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임인과의 협의에 따라 보수산정의 기준을 다른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③ 가산보수는 제2조제2항 각호의 사유에 따라 증액한 보수 및 목적물이나 대상의 수량 또는 인원에 따라 추가하여 받는 보수를 말한다. ④ 기타 보수 및 비용은 각종 대행료, 상담료, 그 밖에 여비 등 실비변상의 비용을 말한다.

법무사의 보수는 부동산등기 등 각종 등기와 상업 등기, 후견등기, 동산 채권 담보등기, 공탁사건의 보수, 경·공매 사건의 보수, 송무·비송·집행사건의 보수 등으로 구체화되어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독립손해사정사의 업무와 유사한 송무·비송·집행사건의 보수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법무사의 송무·비송·집행 사건의 보수표는 아래와 같다.

### 제23조(기본보수)

- ① 법원·검찰청 등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 중 문안을 요하는 서류의 작성에 관한 기본보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소송물가액이 없거나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5천만원으로 한다.

- ② 법원·검찰청 등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 중 문안을 요하지 않는 서류(기일 변경·지정신청서, 판결확정·송달증명신청서, 집행문부여신청서, 기록열람신청서, 도면 등)의 작성에 관한 기본보수는 1건당 30,000원으로 한다.
- ③ 동산집행, 물건의 명도·인도, 선박·자동차·항공기에 관한 감수보전, 채권 기타 재산권의 매각명령 등 집행관이 취급하는 업무의 신청대리에 대한 기본보수는 제1항을 준용한다.

〈표 2〉 법무사 보수표

|        |   |            |      |          |           |
|--------|---|------------|------|----------|-----------|
| 서류 종류  |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화해신청서, 고소·고발장, 항고·상소이유서, 보전처분·집행·비송사건의 신청서, 회생절차 개시신청서·회생채권신고서·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서·파산신청서, 지급명령, 조정신청서 |            |      |          |           |
|        | 소송물가액   |            | 산정방법 |          |           |
|        | 2천만원까지  | 400,000원   |      |          |           |
| 2천만원초과 | 1억원까지   | 400,000원   | +    | 2천만원초과액의 | 10/10,000 |
| 1억원초과  | 5억원까지   | 480,000원   | +    | 1억원초과액의  | 9/10,000  |
| 5억원초과  | 10억원까지  | 840,000원   | +    | 5억원초과액의  | 4/10,000  |
| 10억원초과 | 20억원까지  | 1,040,000원 | +    | 10억원초과액의 | 3/10,000  |
| 20억원초과 |   | 1,340,000원 | +    | 20억원초과액의 | 1/10,000  |
| 서류 종류  | 항고·상소장, 공시최고·소송비용확정신청서, 민사·가사·형사·소년신청(보전신청 제외) 기타 문안을 요하는 서류  |            |      |          |           |
|        | 소송물가액   |            | 산정방법 |          |           |
|        | 2천만원까지  | 180,000원   |      |          |           |
| 2천만원초과 | 1억원까지   | 180,000원   | +    | 2천만원초과액의 | 1/10,000  |
| 1억원초과  | 5억원까지   | 188,000원   | +    | 1억원초과액의  | 5/10,000  |
| 5억원초과  | 10억원까지  | 388,000원   | +    | 5억원초과액의  | 4/10,000  |
| 10억원초과 | 20억원까지  | 588,000원   | +    | 10억원초과액의 | 2/10,000  |
| 20억원초과 |   | 788,000원   | +    | 20억원초과액의 | 1/10,000  |

### 3. 감정평가사

감정평가 의뢰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받는 보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와 그에 필요한 실비(물건

조사비, 공부발급비, 기타실비 등)의 합계액을 받으며, 국토교통부에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를 두고 그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에 관한 기준은 의결하여 정하고 있다.

감정평가사의 수수료 체계는 아래와 같다.

〈표 3〉 감정평가사의 보수

| 감정평가액                    | 수수료 요율 체계                                    |  |  |
|--------------------------|--|--|--|
|                          | 하한 수수료<br>(0.8배 부터)                          | 기준 수수료                                 | 상한 수수료<br>(1.2배 까지)                          |
| 5천만원 이하                  | 200,000원                                     |  |  |
| 5천만원 초과<br>5억원 이하        | 200,000원 + 5천만원<br>초과액의 11/10,000 × 0.8      | 200,000원 + 5천만원<br>초과액의 11/10,000      | 200,000원 + 5천만원<br>초과액의 11/10,000 × 1.2      |
| 5억원 초과<br>10억원 이하        | 596,000 + 5억원<br>초과액의 9/10,000 × 0.8         | 695,000 + 5억원<br>초과액의 9/10,000         | 794,000 + 5억원<br>초과액의 9/10,000 × 1.2         |
| 10억원 초과<br>50억원 이하       | 956,000 + 10억원<br>초과액의 8/10,000 × 0.8        | 1,145,000 + 10억원<br>초과액의 8/10,000      | 1,334,000 + 10억원<br>초과액의 8/10,000 × 1.2      |
| 50억원 초과<br>100억원 이하      | 3,516,000 + 50억원<br>초과액의 7/10,000 × 0.8      | 4,345,000 + 50억원<br>초과액의 7/10,000      | 5,174,000 + 50억원<br>초과액의 7/10,000 × 1.2      |
| 100억원 초과<br>500억원 이하     | 6,316,000 + 100억원<br>초과액의 6/10,000 × 0.8     | 7,845,000 + 100억원<br>초과액의 6/10,000     | 9,374,000 + 100억원<br>초과액의 6/10,000 × 1.2     |
| 500억원 초과<br>1,000억원 이하   | 25,516,000 + 500억원<br>초과액의 5/10,000 × 0.8    | 31,845,000 + 500억원<br>초과액의 5/10,000    | 38,174,000 + 500억원<br>초과액의 5/10,000 × 1.2    |
| 1,000억원 초과<br>3,000억원 이하 | 45,516,000 + 1,000억원<br>초과액의 4/10,000 × 0.8  | 56,845,000 + 1,000억원<br>초과액의 4/10,000  | 68,174,000 + 1,000억원<br>초과액의 4/10,000 × 1.2  |
| 3,000억원 초과<br>6,000억원 이하 | 109,516,000 + 3,000억원<br>초과액의 3/10,000 × 0.8 | 136,845,000 + 3,000억원<br>초과액의 3/10,000 | 164,174,000 + 3,000억원<br>초과액의 3/10,000 × 1.2 |
| 6,000억원 초과<br>1조원 이하     | 181,516,000 + 6,000억원<br>초과액의 2/10,000 × 0.8 | 226,845,000 + 6,000억원<br>초과액의 2/10,000 | 272,174,000 + 6,000억원<br>초과액의 2/10,000 × 1.2 |
| 1조원 초과                   | 245,516,000 + 1조원<br>초과액의 1/10,000 × 0.8     | 306,845,000 + 1조원<br>초과액의 1/10,000     | 368,174,000 + 1조원<br>초과액의 1/10,000 × 1.2     |

#### 4.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등) 제1항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그리고 제2항에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제25조 제1항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제31조에 따른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또 제4항에서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인중개사의 보수기준은 시행규칙에 다음과 같이 상한선을 두고 있다.

〈표 4〉 공인중개사보수

|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제20조제1항 관련) |                 |        |      |
|--------------------------|-----------------|--------|------|
|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1.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                          |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      |
| 2.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                          |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



### Ⅲ. 독립손해사정사의 보수기준

#### 1. 독립손해사정사의 정의

보험업감독규정(개정 2009. 7. 22.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9-43호) 제16조(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에 따르면 “① 법 제185조에서 정한 ‘보험계약자 등’ 이라 함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피해자 그밖에 보험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②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의한다. 1.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3.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아니한 때, 4.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손해사정사의 보수는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등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보험계약자 등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험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임된 손해사정사는 보험계약자 등을 대리하여 통보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업법상 선임손해사정사 즉 독립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에 고용된 고용 손해사정사를 제외한 보험회사의 위탁을 받아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위탁 손해사정사와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임받아 보험회사와 별도로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손해사정사로 분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험회사에서 선임하는 독립손해사정사를 위탁 손해사정사라 칭한다면 순수한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하는 독립손해사정사는 독립손해사정사라 칭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고, 실무에서도 독립손해사정사는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하는 손해사정사만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하에서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하는 손해사정사를 순수독립손해사정사라 칭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독립손해사정사라 칭한다.

## 2. 과거의 독립손해사정사의 보수 기준의 변천사

### 가. 1993년 12월 3일 제정 2007년 2월 이전까지의 보수기준

현재 손해사정사의 보수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는 법 조항은 없다. 2007년 2월 이전까지는 보험업감독규정 제9-17조에서 독립손해사정사에 대한 보수기준을 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보수의 경우에는 손해사정사 단체와 보험협회가 협의에 의해 보수기준을 정하되 해당 보수기준은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자 등이 부담하는 보수의 경우에는 손해사정사 단체<sup>2)</sup>가 보수기준을 정하되 해당 보수기준은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다. 2007년 2월 동 규정이 개정되면서 보험회사의 고용 및 위탁 손해사정사의 보수기준은 삭제되고, 제9-17조에는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독립손해사정사의 보수기준에 관한 내용만 남았다가, 이후 2014년 12월 31일 동 조항도 전부 삭제되면서 현재 손해사정 보수에 대한 명시적 법규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손해사정사 선임계약 시 보수를 당사자 간에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sup>3)</sup>

1993 12. 23. 제정된 자료(손보 540-16565)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보수기준 중 제3종 보험계약자 등이 부담하는 독립손해사정인의 보수기준에 관한 규정<sup>4)</sup>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손해사정인관리규정 제7조(보수)제1항 제2호에 의한 보험계약자 등이 부담하는 제3종 독립손해사정인의 대인 손해사정 보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기준에서 “손해사정업무”라 함은 손해사정인관리규정시행세칙 제3조에 정한 손해사정업무를 말한다. ② 이 기준에서 “손해사정금액”이

2)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사단법인으로 협회를 지칭한다.

3) 송윤아·홍민지,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 2021. 33쪽

4) 당시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선임을 받는 손해사정사는 제3종 손해사정사가 주였고, 당시에는 손해사정사라는 용어대신 손해사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하여 타자격사와 마찬가지로 손해사정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라 함은 손해사정인이 작성 날인한 손해사정보고서<sup>5)</sup>상의 사정금액을 말한다. 단, 이 손해사정금액과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금액이 상이할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손해사정금액”으로 본다

제3조 (일부위탁) 손해사정업무 중 일부만을 지정, 위탁할 경우의 보수는 이 기준의 범위내에서 당사자간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적용단위)이 기준은 1보험사고 1피해자(피보험자)를 손해사정단위로 한다.

제5조(보수 등) ① 손해사정업무위탁에 대한 독립손해사정인의 보수는 별표에 의하여 산정된 손해사정 보수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사자간에 약정하여 결정한다. ② “별표 손해사정보수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에 해당사고의 특성상 관계 전문인의 활용 등 이례적인 부대비용이 발생한 경우 그 소요실비를 합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보수 중 부대비용은 사전에 위탁자의 동의를 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다.

<표 5> 손해사정보수표

| 손해사정금액       | 요율(%) | 누진가산액   |
|--------------|-------|---------|
| 1000만원 이하    | 7     | 0       |
| 1천만원~3천만원 이하 | 6.75  | 25,000  |
| 3천만원~5천만원 이하 | 6.5   | 100,000 |
| 5천만원~7천만원 이하 | 6.25  | 225,000 |
| 7천만원~1억원 이하  | 6     | 400,000 |
| 1억원 초과       | 5.75  | 650,000 |

\* 이 보수표의 적용은 단계별로 누진적용한다.

위 규정 제정당시 보험업감독규정 제9-17조 (보수)에 따르면 “① 보험계약자 등(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피해자, 그밖에 보험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말한다)이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에 부담하는 보수는 손

5) 당시에 위탁의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는 중간보고서 나중에는 최종보고서를 보험회사에 보고하였고, 그 영향으로 손해사정보고서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손해사정의 결과물인 손해사정서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작성되어야 하므로 보고서라는 명칭은 윗선에 보고하는 형식이므로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이후 손해사정서라는 명칭으로 통일 되었다.

해사정사 단체가 정한 보수기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보수기준은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6)” 고 규정되어 있었다.

#### 나. 2009. 12. 10. 제정 독립손해사정사의 보수기준

독립손해사정사의 보수기준7)(독사 09-01. 2009. 12. 10.)에 따르면, 신체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업무 기본보수는 손해사정액의 10%(부가가치세 별도)를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기본보수의 범위내에서 손해사정업무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약정할 수 있다.

- 해당사고의 특성상 관계전문인의 활용 등 추가로 소요되는 부대비용이 발생한 경우
- 난이도(면부책의 경계성, 건처리의 난이성 등)건의 경우

#### 다. 2014. 12. 31.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난 2014. 12. 31. 감독당국은 감독규정 개정 시 보험소비자가 부담하는 보수기준의 승인의무를 폐지하였다.8) 그래서 보험소비자와 독립손해사정사 쌍방이 위임계약할 때 보수를 정하는 것이 현실이다.9) 그러다 보니 항상 과다보수의 문제도 대두된다. 과거에는 ‘독립손해사정사의 보수기준’ (독사 09-01, 2009. 12. 10)10)과 ‘보험계약자 등이 부담하는 독립손해사정사의 보수기준’ (손보 540-16565, 1993. 12. 23) 이하 ‘자동차대인사고 보수기준’ 이라 함)11)

6) 이 규정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2014. 12. 31.자에 삭제 되었다.

7) 당시에는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하는 손해사정사의 경우 제3종이 주였고, 배상책임이나 화재보험같은 순수손해보험의 경우 독립손해사정업을 수행하는 자가 없어 실질적인 독립손해사정사의 보수기준은 제3종 대인손해사정사가 유일하였다.

8)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전문직서비스의 가격을 그 공급자가 집단적으로 정한다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합리성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보수기준을 폐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9) 보통 10~15% 정도의 보수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정금액을 약정하는 정액보수로 계약 하기도 한다.

10) 이 기준은 독립손해사정사의 보수를 10% 이내로 정하고 있다.

11) 자동차 대인사고의 손해사정 보수기준을 말하며, 보통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7.7%~6%로 단계화되어 있다.

이 있었다. 현재는 ‘독립손해사정사의 보수기준’을 표준으로 한다지만 보편적으로 사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현장에서 보험소비자는 과거에 있었던 ‘자동차대인사고 보수기준’이 모든 보수의 기준에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독립손해사정사는 시장가격으로 보수를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서로 다른 입장에서 자신이 유리하게 생각하는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 생각된다.<sup>12)</sup>

### 3. 과거의 재물손해사정사의 위탁 손해사정사 보수 기준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과거에는 재물손해사정사의 경우 제3종 자동차대인업무 또는 신체손해사정사와 달리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하는 손해사정의 경우가 전무하였고, 대부분 위탁 손해사정사에 의해 손해사정이 이루어졌고, 종결되는 것이 일반화되었으나, 최근에는 재물손해사정의 경우에도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하는 독립손해사정업이 일반화되어 이에 따른 보수기준이 필요하게 되었으나,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2014. 12. 31. 보험업감독규정상 보수기준이 폐지됨으로써 재물손해사정사의 경우 독립손해사정사의 보수기준이 제정되지도 아니하고 현시점에 이르러서 많은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재물의 경우 과거 독립손해사정사의 보수기준에 대해서는 살펴볼 수 없다 할 것이나, 과거 위탁 손해사정사의 경우 보수기준이 따로 정해져서 지켜지고 있었으므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논문에서는 재물손해사정사의 위탁 손해사정사 보수기준을 참고자료로 첨부하고자 한다.

독립의 경우 개별적으로 보험계약자 등으로 위임받는 경우이므로, 이 위탁 손해사정사 보수기준에 얼마일 필요는 없으나 손해사정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으로 인하여 이 기준에서 많이 벗어나는 손해사정위임계약의 경우 판례에서 제한을 받을 것으로 본다.

12) 김명규외 1, “손해사정사 보수기준 개선방안”, 손해사정연구 제4권 제1호, 2012. 8. 85쪽

#### 4. 손해사정사 보수에 관한 참고 판결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 29804 판결에 따르면 “독립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위임사무 처리에 대한 보수액에 관하여는 보험계약자 등과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임사무를 완료한 독립손해사정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수임의 경우,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노력의 정도, 손해사정액, 당사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관련된 손해사정사 단체의 보수기준 등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함으로써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약정한 보수의 청구가 가능하지만, 형평의 원칙에 따라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수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보수기준의 제정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 IV. 보수기준의 필요성

#### 1. 보수기준의 필요성 여부

현재 보수기준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자격은 법무사와 감정평가사 그리고 공인중개사만이 있고, 변호사의 경우 소송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표만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법무사와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를 제외한 유사 전문자격의 보수규정이 폐지된 이유는 지난 1999. 2. 5일 공포·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약칭 “카르텔 일괄정리법” 이라 함)」의 영향이 크다고 본다.<sup>13)14)</sup>당시 카르텔 일괄

정리법은 전문직서비스의 보수(수수료)를 해당 사업자단체가 정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각 법률에 근거를 둔 카르텔을 폐지 또는 개선하는 내용으로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행정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수의사, 건축사 등 9개 직종이 여기에 해당되어 있었던 보수기준이 없어지게 되었다<sup>15)</sup>. 또 카르텔 일괄정리법의 법적 효력은 입법형식상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각 개별 법률에 우선한다는 내용이었다.<sup>16)</sup>

전문직의 보수기준을 폐지하게 된 배경으로 카르텔 일괄정리법 제정 전에는 전문직서비스에 대해서 수요자가 정보부족으로 인해 서비스의 질과 내용을 판단할 수 없고, 부당한 요금을 요구받게 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가 개입하여 사업자단체가 보수를 거의 일정한 수준으로 정해져 왔으며, 소비자들도 여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으나, 전문직서비스도 많은 상품(서비스) 가운데 하나이며, 경쟁이 도입될 경우 수수료 인하, 소비자의 선택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수요자의 후생이 증대될 수 있다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게 되었으며, 여기에는 종래의 전문직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도 크게 작용한 면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전문직서비스의 가격을 그 공급자가 집단적으로 정한다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합리성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보수기준을 폐지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문자격사별로 서비스 및 보수의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소비자는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자격사를 선택할 수 있는 지위를 누리게 한다는 취지에서 입법되었다는 것이었다.<sup>17)</sup>

13) 이황, “카르텔 일괄정리법의 입법취지와 향후 정책방향 -보험산업을 중심으로-”, 손해보험, 1999. 5월호, 50쪽

14) 김명규 외 1, “앞의 논문”, 88쪽. 재인용

15) 이황, 앞의 논문, 53쪽

16) 카르텔 일괄정리법에 포함된 카르텔에 대하여 개별 법률이 다시 개정되어야 폐지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입법형식상 “신법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일괄정리법 자체로 개별법이 이미 개정된 것으로 보며, 추후 개별법과 관련하여 필요한 것은 요식적인 문안정리 뿐이라는 해석이다. 따라서 법무사의 보수기준이 효력이 있는 지는 의심스럽다.

17) 이황, 앞의 논문, 53쪽.

그러나 법무사와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의 보수(수수료)의 보수기준이 현재 존치하고 있는 이유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률 서비스와 부동산이라는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비중과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또 주택 등 중요한 부동산의 거래에 따른 경제적 유통이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보수기준을 정하여 규제할 필요성이 있어 법정수수료 제도로 존재하는 것이라 사료된다.

이러한 면에서 보험회사의 사회성, 공공성과 보험소비자의 선의(윤리)성이 강조되는 보험계약의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손해사정 서비스도 국민의 삶과 밀접하고 경제적인 비중도 크고 직접적인 영향을 크다 할 것이므로 보수기준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 2. 외국의 사례<sup>18)</sup>

손해사정사 제도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외에 미국, 영국 및 영연방 국가 외에는 없다고 하겠다.<sup>19)</sup> 따라서 미국의 경우를 보면 손해사정업계의 업무수입 및 보수의 분쟁에 있어 미국의 경우 불합리한 수입료와 보험소비자에게 불이익한 손해사정을 규제하는 자율규제기관(NAIIA : 미국독립손해사정사협회)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sup>20)</sup>

---

18) 김명규 외 1, “앞의 논문”, 89쪽, 재인용

19) 유사한 제도가 독일에 있고, 일본은 자동차대물 사정사 제도가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도이다.

20) 남상욱, “선진국의 보험전문인 운영사례와 시사점”, 월간 금융리포트, 2006. 12, 21쪽.



## V. 독립손해사정 보수기준의 개선방안

### 1. 현행 독립손해사정사 보수기준

2014년 이전에 사용된 ‘독립손해사정사의 보수기준’ 과 ‘자동차대인사고 보수기준’ 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보수기준이며, 현재 시장에서 통용하는 표준기준은 ‘독립손해사정사의 보수기준’ 이라 하겠다.<sup>21)</sup>

다만, 2014. 12. 31. 보험업감독규정상의 보수기준의 폐지로 인하여 현재는 각 독립손해사정업자들이 보험계약자 등과 협의에 의해 약정한 금액을 보수로 책정하고 있는 실정이나, 손해사정사의 업무가 공공성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음은 명백한 사실이므로, 단순히 계약당사자 간의 자율의사에 맡기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통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2. 독립손해사정업자 보수기준의 제정 효과

① 법무사법 제2조(업무) ①항 1호에는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자, 이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을 이 1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보수를 지급받았는데, 이러한 사항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있었다.

② 이후 법무사들은 입법 활동을 통하여 6호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 다만,

21) 한국손해사정사회는 2009. 12. 10일 자율규정으로 보수기준을 승인받아 사용하였다. 독립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업무 기본보수는 손해사정금액의 10%를 원칙으로 하고, 이 경우 기본보수의 범위 내에서 손해사정업무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약정할 수 있다. 그리고 기본보수 외에 부가적으로 여비교통비 등을 산정할 수 있으며, 1인 이상이 하는 손해사정업무 보수 또는 기본보수의 적용이 곤란한 손해사정업무 보수의 산정은 인건비 기준단가에 소요일수를 곱한 금액과 제경비 등 일반관리비로 인건비 총액의 20%를 합산한 금액으로 실비계산방식에 의한다. 이 경우 여비교통비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는 제외한다.” 라는 규정을 제정하게 되었다.

- ③ 따라서 독립손해사정사들도 이러한 대리규정을 입법화하는 것이 최선이나, 현실적으로 이는 불가능에 가깝다.

법무사들은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기 이전에 법무사구법에 의해 업무를 처리하였다. 법무사의 업무행태를 독립손해사정사들이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별도로 필요하겠지만 필자로서는 변호사법 위반과 맞물려 법무사의 보수기준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독립손해사정사의 경우 금융위원회 또는 손해사정사 단체에서 규율로 정한 독립손해사정사 보수기준에 의한 표준적인 업무의 시행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것이고, 이에 관해 별도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나 우선 참고로 예시는 필요할 것으로 여겨져 이하에서 보수기준의 예를 예시하고자 한다.

### 3. 독립손해사정사의 보수기준 예

이하 보수기준은 업무행태가 유사한 법무사의 보수기준을 독립손해사정업무 특히 신체손해사정사의 경우에 걸맞게 맞춰 마련한 것이다. 재물손해사정사의 경우 기회가 있으면 따로 연구하여 발표하겠다.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추후 많은 검토와 수정·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6> 독립손해사정사 보수기준의 예시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하는 독립손해사정업자의 보수기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하는 독립손해사정사정업자(이하 “독립사정업자”라 한다)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받는 보수 및 비용에 관한 기준의 상한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수 책정의 원칙)**

- ① 독립손해사정업자의 보수는 손해사정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난이도와 전문성 정도,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손해사정사의 책임범위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상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 ② 독립손해사정업자는 전국손해사정업협회에서 정한 별표의 보수기준표(이하 “보수기준표”라 합니다)에서 정한 상한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독립손해사정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수기준을 초과하여 보수액을 증액할 수 있으나, 그 사실을 위임인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업무의 성격이 면책이나 보험회사의 지급거절 등으로 증대하거나 복잡한 경우
  2. 업무의 처리기간이 일반사건에 비해 현저하게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업무의 처리에 특별한 인원의 투입 등으로 많은 소요 비용이 예상되는 경우
  4. 그밖에 업무의 성격상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동의하에 정한 경우

**제3조(보수에 대한 설명)**

- ① 독립손해사정업자는 보수기준을 사건을 수임할 때 위임인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 ② 독립손해사정업자는 위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임한 사건의 보수액과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보수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수임한 업무의 중단 등에 따른 보수)**

- ① 독립손해사정업자가 손해사정에 필요한 서류,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서류 등을 구비하여,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이후에 위임인의 사정에 의하여 업무가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 보수 총액의 60% 범위 내에서 보수를 받는다.
- ② 손해사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임인의 사정에 의하여 업무가 중단된 경우 보수기준표의 각 해당항목별 보수를 받는다.
- ③ 위임인의 사정에 의해 업무가 중단된 경우, 독립손해사정업자는 위 1항의 보수를 받기 전까지는 보관 중인 서류 등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부가가치세)**

이 규정에 따른 독립손해사정업자의 보수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다.

**제6조(보수기준의 조정)**

이 규정에 따른 보수기준은 물가등락 등 경제 사정의 변동을 감안하여 전국손해사정업협회가 총회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 독립손해사정업자의 보수기준표

1. 기본조사 보수

독립손해사정업자가 손해발생사실의 확인을 위해 사고현장, 경찰서, 검찰청, 법원, 의료기관, 정비업체 등에 조사업무를 시행한 경우 매1회당 20만원으로 한다.

2.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에 따른 보수

보험약관, 판례 검토 및 면부책 판단 등 난이도에 따라 정하며, 난이도에 따라 20만원 ~ 60만원까지 협의에 의해 정한다.

3. 손해사정서 작성 제출에 따른 보수

| 손해액 및 보험금 액수                     | 기본보수 (산정방법)             |
|----------------------------------|-------------------------|
| 2천만원까지                           | 1,000,000원              |
| 2천만원 초과 1억원까지                    | 1,000,000 ~ 5,000,000원  |
| 1억원초과 5억원까지                      | 5,000,000 ~ 10,000,000원 |
| 5억원초과                            | 10,000,000원을 한도로 한다.    |
| ※ 손해액과 보험금이 다른 경우 최종 결정보험금으로 한다. |                         |

4. 손해사정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 제출의 대행에 따른 보수

장해신청, 이의신청, 보정요청에 대한 답변, 손해사정동의, 의료자문동의, 상속인조회 등 서류의 작성 및 제출대행, 손해사정서 내용 설명 등 매1회당 10만원으로 한다.

5. 손해사정업무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에 따른 보수

손해사정 의견을 포함한 의견진술 등 매1회당 20만원으로 하되, 문안을 요하는 경우 매1회당 20만원으로 한다.

6. 독립손해업자가 이 보수기준표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약정할 경우 그 사정을 명시하고 따로 보수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7. 보수한도액

이 보수기준표에 의해 산정한 금액이 최종 결정보험금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10%를 한도로 한다.

## VI. 맺는말

현행법상 보수기준을 독립손해사정업자들이 스스로 제정하여 공표하고 이를 시행하는 것은 오히려 규제라는 의견이 있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독립손해사정사 단체가 약자적 지위에 있는 보험계약자 등에게 카르텔을 형성해서 계약자유의 원칙을 위배한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 만인을 만족시키는 보수기준은 사실상 없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만든 보수기준도 오히려 규제라는 족쇄가 된다. 그러면 보수기준이 없으면 모두 편하고 좋은가? 그렇지 않다. 힘이 있고 우월적 지위를 가진 자는 편하고 좋을지 몰라도 다수의 상대방은 오히려 힘들고 불편함의 연속이다. 이는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잣대가 없으므로 인해 주도권 있는 강자에게 유리한 일방적인 기준에 의해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약자에게는 최소한 내세울 수 있는 객관성이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의 필요성이 절대적이라 보인다.<sup>22)</sup>

그런데, 합리적인 보수기준을 상호 간에 협의로 만들면 좋는데, 위탁손해사정사와 달리 독립손해사정사들은 불특정 다수의 보험계약자 등을 상대하기 때문에 이들 단체와 상호협이라는 자체가 불가능하다. 결국, 보수기준은 독립손해사정사 단체가 도덕성과 형평성을 감안한 합리적 보수기준을 만들고, 구성원이 모두가 지키면서 시장 논리에 따라 소비자들로부터 선택을 받아야 한다.

필자는 처음부터 손해사정업무의 보수기준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논문을 시작하였다.

왜냐하면, 위탁손해사정법인의 경우에 자긍심과 안정적인 환경에서 적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위해서, 독립손해사정사의 경우에도 과다보수라는 굴레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객관적이고 표준적인 보수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수기준은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한 손해사정 문화의 조성에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하며, 나아가 보험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게 되므로 보험

22) 김명규 외 1, “앞의 논문”, 88쪽.

회사나 보험소비자에게도 건전하고 균형이 있는 이바지를 하게 될 것이다.<sup>23)</sup>

현재 독립손해사정업자 중 신체손해사정사들은 그룹별로 자체적으로 손해사정 보수기준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필자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예시로 든 보수기준을 적용하여 업을 영위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보수기준은 계약 자유원칙에 따라 독립손해사정사의 경우 선택의 영역이다. 강제할 수도 없고, 강제한다고 전 구성원이 다 따르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합리적으로 과다보수라는 오명을 지우기 위해서라도 기준이 되는 보수기준은 필요하리라고 본다. 현재 독립손해사정사들이 관행적으로 받고 있는 수령 보험금액의 10%정도가 과다하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독립손해사정업자들의 관행적인 보수를 과다하다고 인정하면, 그러한 관행을 고집하는 독립손해사정사들은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라도 보수기준의 제정은 필요하리라고 본다.

또한, 재물손해사정사의 경우도 신체손해사정사의 경우를 준용하여 실제 수령 보험금액의 몇 %로 계약을 체결하고, 업을 수행하는데 과다경쟁으로 인해 이 보수의 액을 적게 제시함으로써 오히려 과소보수의 문제 즉 덤핑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보험회사와 위탁손해사정사 간의 보수기준처럼 보다 합리적인 독립손해사정업자만을 위한 보수기준이 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23) 김명규 외 1, “앞의 논문”, 87쪽.

## <참고문헌>

- 국회사무처, 국회통과법률집 제13집(법률 제3043호), 1977 12. 31.
- 김명규외 1, “손해사정 보수 개선방안”, 손해사정연구 제4권 제1호, 한국손해사정학회, 2012. 08.
- 이 황, 카르텔 일괄정리법의 입법취지와 향후 정책방향 -보험산업을 중심으로-, 손해보험, 1999. 5월호.
- 장경환, 독일보험계약법상의 손해감정인, 보험학회지 제43호, 한국보험학회, 1994. 4.
- KH종합손해사정법인, ” 보수기준표 “
- 대법원규칙,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
- 대한법무사회, ” 법무사보수표 “
- 보험업감독규정, ” 선임손해사정인 보수기준 “,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 감정평가사의 보수표 “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공인중개사의 보수상한율표 “
- 한국손해사정사회, 손해사정사 변천사 2006. 6.
- National Association of Independent Insurance Adjusters(<http://www.nalia.com>)
- National Association of Public Insurance Adjusters (<http://www.napia.com>)
- The Chartered Institute of Loss Adjusters(<http://www.cila.co.uk>)

## Abstract

In this study, we identified problems with the current insurance company's consignment claim adjusters and independent claim adjuster fee standards and sought ways to improve them. When insurance companies entrust damage assessment services, the low-cost remuneration system exposes many problems such as disputes over the appropriateness of compensation and unfair contracts, and leads to poor damage assessment by entrusted claim adjusters, which has a negative impact on the calculation of appropriate insurance premiums and ultimately causes insurance consumer dissatisfaction. I'm doing it. Meanwhile, unlike entrusted adjusters, independent claim adjusters who perform work entrusted to them by insurance policy holders, etc., are facing the problem of receiving excessive compensation. In order to resolve these negative effects in the claim adjustment market, this study examines past fee standards, examines whether remuneration standards are necessary, and, if remuneration standards are necessary, establishes some type of remuneration standard to some extent in line with other qualified companies. We are raising questions about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establish a remuneration standard, and in the case of body damage adjusters, damage adjusters are applied in practice to some extent customarily, but in the case of property damage adjusters, the problem of dumping is occurring due to excessive competition, it was suggested as an improvement plan to establish new compensation standards.

※ **Key words** : claim adjuster, independent claim adjustment, adjuster fee standard



(부록)

## 선임손해사정인 보수기준

손보 510-7453(1991. 7. 27)

손보 710- 11(1997. 4. 16)

손보 710- 279(2003. 3. 7)

### 1. 목적

이 기준은 보험업 감독규정 제 179조 (보수)에 의거 선임 손해사정인의 보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용어의 정의

- ① 이 기준에서 "손해사정 업무"라 함은 보험업법 및 보험업 감독규정에서 정한 손해사정 업무를 말한다.
- ② 이 기준에서 "손해사정금액"이라 함은 "손해액확정 금액"을 말한다. 다만, "지급보험금액"이 "손해액 확정금액"의 30%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고의 경우에는 위탁당사자간에 협의에 의하여 "손해액확정금액"의 50%범위내에서 "손해사정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③ 배상책임을 담보한 보험약관(특별약관 포함)에 대한 손해사정업무의 경우, "손해사정금액"은 약관상 담보하는 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상책임액에서 자기부담금등의 공제금액을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고, 보험사업자는 손해조사 위임시 조사대상 물건(또는 내용)에 관하여 제한할 수 있다.

### 3. 일부위탁

보험업법 제 204조의 4(손해사정인 등의 업무) 에서 정한 손해사정업무중 일부만을 지정, 위탁할 경우의 보수는 이 기준의 범위내에서 당사자간에 따로 정할 수 있다.

### 4. 일괄위탁시 적용보수

보험사업자가 1년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보험종목이나 담보보험의 종류 또는 보험사고 일체에 관한 손해사정업무를 특정 선임 손해사정인에게 일괄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의 사전협의를 의하여 이 기준에 정한 보수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5. 적용단위

- ① 이 기준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별 1사고 1물건(단, 자동차보험의 대인 및 대물배상책임보험의 경우에는 피해자(물)별)을 단위로 하며, 손해사정업무를 수입받는 선임손해사정인 마다 각각 적용한다. 단, 공동건물의 경우 총손해사정금액은 각 피해세대별 손해액 확정금액을 합산적용하나, 각 세대별 피해수에 따라 별표 1의 가).주) 2.에 정한 소정의 할증율을 가산한다.
- ② 1사고에 대하여 1선임손해사정인이 2물건이상의 손해사정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여 물건당 기본료만을 지급할 경우에는 2물건까지는 기본료 정액을, 2물건을 초과하는 물건부터는 기본료의 50%를 적용한다.
- ③ 1사고 1물건에 대하여 다수의 보험자가 관련되어 각보험자가 공동으로 1선임손해사정인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산출된 보수액을 각 보험자가 공동으로 분담하되 그 분담액은 각 보험자별 손해액 확정금액에 따라 비례안분하여 결정한다.

### 6. 보수의 기준

- ① 손해사정업무 위탁에 대한 선임손해사정인의 보수는 "별표1 손해사정 기본보수표"와 "별표2 보험금 사정 보수표" 및 "별표3 여비교통비 지급기준"에 의하여 각기 산정한 금액에 당해 사고의 특성상 관계 전문인의 활용등 이례적인 부대비용이 발생한 경우 그 소요실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보수중 부대비용은 사전에 위탁자의 동의를 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다.
- ③ 손해조사가 종료된 것으로 보험약관 등에 의한 보험금 사정업무만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1항의 보수중 "별표1 손해사정 기본보수표"에 정한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7. 면책사고에 관한 보수적용

- ① 손해사정업무 수행중 보상책임과 관련이 없는 단순사고로 판명된 경우 및 손해사정인이 면책사고임을 입증하여 면책치리를 한 경우 및 사고원인제공자(임차인, 제조업체, 제3자등)로 하여금 직접 보상토록 하여 보험금청구포기에 의한 면책을 확정된 경우에는 별표1 손해사정보수표의 기본료와 별표3에서 정한 여비교통비를 지급한다. 다만, 보험자의 요청에 의해 보험가액 및 손해액을 평가할 경우에는 협의에 따라 정할 수 있다.
- ② 선임손해사정인이 위탁업무수행 중 고의적인 사고유발 등 보험사기를 입증하여 면책처리한 경우에는(고의면책) 별표1에 관계없이 손해조사과정과 결과를 토대로 당사자간 협의하여 추정지급보험금의 5배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을 손해사정금액으로 인정하여 별표1에 의하여 산정한 수수료와 별표3에 의한 여비교통비와 보험사업자와 사전 협의하여 지출한 기타특별비용을 합산 지급한다.
- ③ 선임손해사정인이 고의적인 사고유발 등이 의심되어손해조사를 하여 채무부존재 및 기타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별표1에 따라 보고서상 추정손해액으로 우선 청구하고 소송결과에 의거 상기 ②항에 따라 추후 정산한다. 단, 결과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보험사업자와 사전 협의하여 지출한 기타특별비용은 전액 지급한다.

## 8. 보수의 지급시기 등

- ① 보험사업자는 손해사정인의 최종손해사정보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까지 보험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사정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보험사업자, 계약자 및 피보험자간의 보험금과 관련한 이견이 있어 최종손해사정보고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 보험사업자는 손해사정 진행 중 소송제기로 중도 종결되거나 또는 손해사정보고서 제출 후 소송이 제기되는 등의 경우에도 최종 손해사정보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까지 선임손해사정인에게 손해사정수수료를 지급한다.
- ③ 선임손해사정인 보수기준의 조정시기는 조정후 매 2년마다 위탁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조정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

### 부 칙

이 기준은 199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

이 기준은 1997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

이 기준은 200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1] <개정 2003. 3. 7>

### 손해사정 기본보수표

가. 제1종

① 재물 및 배상책임보험

| 손해사정금액         | 요율(%) | 기준액(원)     |
|----------------|-------|------------|
| 1천만원 미만        | 기본료   | 660,000    |
| 1천원이상~2천만원미만   | 5.06  | 1,012,000  |
| 2천만원이상~3천만원미만  | 4.18  | 1,254,000  |
| 3천만원이상~5천만원미만  | 3.74  | 1,870,000  |
| 5천만원이상~1억원미만   | 2.88  | 2,882,000  |
| 1억원이상~2억원미만    | 2.20  | 4,400,000  |
| 2억원이상~3억원미만    | 1.95  | 5,841,000  |
| 3억원이상~5억원미만    | 1.61  | 8,030,000  |
| 5억원이상~10억원미만   | 1.27  | 12,650,000 |
| 10억원이상~20억원미만  | 1.11  | 22,220,000 |
| 20억원이상~30억원미만  | 1.02  | 30,690,000 |
| 30억원이상~50억원미만  | 0.91  | 45,650,000 |
| 50억원이상~100억원미만 | 0.4가산 |            |
| 100억원 초과금액     | 0.2가산 |            |

(주) 1. 화재, 폭발, 풍수재등 재물전손사고의 손해사정기본 보수는 위탁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손해액확정금액의 50%를 손해사정금액으로 하여 위표에 의한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손사고라 함은 손해액 확정금액이 보험가액의 80%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동산에 대하여는 본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1. 배상책임을 담보한 보험약관(특별약관 포함)에 대한 손해사정업무 수행시에는 손해액확정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사정금액”으로 정하여 위표의 요율을 적용한다.
- 2. 피해자(또는 피해세대수)가 10인 이상인 집단사고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할증율을 적용한다.

| 구 분       | 할 증 율         |
|-----------|---------------|
| 10~30인미만  | 손해사정수수료의 1.2배 |
| 30~200인미만 | 손해사정수수료의 1.5배 |
| 200인이상    | 손해사정수수료의 2배   |

- 3. 제1종 보험종목사고로서 손해액 100만원이하의 대물배상책임(소액대물) 및 구내치료비 등 단순현장조사일 경우에 대한 보수는 별표1의 손해사정보수표에 관계없이 기본수수료의 50% 범위내에서 적용할 수 있다.
- 4. 이 보수표를 적용함에 있어 산출된 보수가 차하위 구분에 의한 기준액(또는 기본료)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기준액(또는 기본료)을 적용한다.

② 인보험

(1) 상해보험

| 조사일수        | 기준액(원)  |
|-------------|---|
| 1~3일        | 300,000   |
| 4~6일        | 500,000   |
| 7~10일       | 660,000   |
| 11~15일      | 기본료(660,000)의 20% 할증  |
| 16일이상       | 기본료(660,000)의 50% 할증  |
| 기타          | 모탈사고건의 조사에 대해서는 조사일수를 기준으로 기본보수료의 할증율을 적용하여 당사자간에 협의 결정           |
| 면책시         | 당기기준액 + 예상지급보험금의 5% 또는 해당기준액의 2배액중 높은 금액(최고 지급한도 500만원, 단순면책건 제외) |
| 손해액 동의시     | 해당기준액 + 해당기준액 ×(조정액/추정지급총액)                                       |
| 피보험자 복수인 경우 | 3인 미만 해당기준액으로 하며, 3인이상 1인당 10%할증하여, 30% 할증을 상한선으로 한다              |
| 중복보험시 최저수수료 | 각사별 (예상)지급보험금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며, 사별 최저기준액은 200,000(원)으로 함              |

- (주) 1. 상해보험에 대한 보수기준은 위탁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2. 조사일수는 해당건의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산입한다.  
 3. 청구인의 지연이 아닌 사유로 보고서 제출이 상당기간 지연된 경우 하위 기준액 적용한다.  
     - 1~3일:수입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 4~6일수입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  
     - 7~10일수입일로부터 21일 이내 제출  
     - 11일이상:수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  
 4. 출장비는 별도로 산입한다.

(2) 질병보험

| 조사횟수        | 기준액(원)  |
|-------------|---|
| 1~3곳        | 300,000   |
| 4~7곳        | 400,000   |
| 8~11곳       | 500,000   |
| 12~15곳      | 660,000<br>(1종 재물보험 기본료에 따라 책정)                                 |
| 16곳이상       | 기본료(660,000)의 30% 할증  |
| 기타          | 모탈사고건의 조사에 대해서는 조사일수를 기준으로 기본보수료의 할증율을 적용하여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
| 면책시         | 해당기준액+예상지급보험금의 5% 또는 해당기준액의 2배액중 높은 금액(최고지급한도액 500만원, 단순면책건 제외) |
| 손해액 동의시     | 해당기준액 + 해당기준액 ×(조정액/추정지급총액)                                     |
| 피보험자 복수인 경우 | 3인미만 해당기준액으로 하며, 3인이상 1인당 10% 할증하여 30% 할증을 상한선으로 한다             |
| 중복보험시 최저수수료 | 각사별 (예상)지급보험금의 비율에따라 분배하며, 사별 최저기준액은 200,000(원)으로 함             |

- (주) 1. 질병보험에 대한 보수기준은 위탁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2. 조사일수는 해당건의 조사를 목적으로 방문조사하는 경우에만 산입한다.  
 3. 청구인의 지연이 아닌 사유로 보고서 제출이 상당기간 지연된 경우 하위 기준액 적용  
 -1~3곳:수입일로부터 7일이내 제출  
 -4~7곳수입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  
 -8~11곳수입일로부터 21일이내 제출  
 -12곳이상:수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  
 4. 출장비는 별도로 산입한다.

(3) 기타 특이사례

| 유형  | 기준액(원)   |
|---|--|
| 손해사정 의견서 작성비 - 민원 3중손사인 개입시를 → 보험계약자 등이 별도로 손해사정사에게 업무선임시 | 100,000  |
| 의료심사 의뢰시  | 1일 일당 인정   |
| 후유장해 동시 감정시   | 500,000  |
| 피보험자 상태 Video 촬영시   | 2회이하 동시장해 감정료 300,000원<br>3회이상 동시장해 감정료 2회초과 1회당 200,000원 추가 |
| 해외사고 조사시  | 상해보험 기준액을 기본으로하며, 당사자간 별도 협의하여 결정                            |
| 조사진행중 소송제기시   | 소송진행전 기준보수료에 따라 1차정산하며 소송결과에 따라 면책등에 따른 추가지급                 |

- (주) 1. 상해 및 질병보험에 대한 보수기준은 위탁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나. 2종

| 종목                              | 기준   | 금액   |
|---------------------------------|--|--|
| 1. 선박의 선체, 기관, 의장의 손상조사 및 손해액산정 | 가. 현장조사<br>(1) 1인 1일<br>나. 손해사정<br>(1) 손해사정금액 1천만원까지 2.2%<br>(2) 1천만원초과 3천만원까지 초과분의 1.65%<br>(3) 3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초과분의 1.1%<br>(4)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초과분의 0.77%<br>(5) 1억원초과 10억원까지 초과분의 0.55%<br>(6) 10억원초과시에는 초과분의 0.22%<br>다. 기본료 | ₩150,000<br><br><br><br><br><br><br><br>₩500,000 |
| 2. 항공의 기체, 기관, 의장의 손상조사 및 손해액산정 | 가. 현장조사<br>(1) 1인 1일<br>나. 손해사정<br>상기종목1(선박)의 기준과 동일<br>다. 기본료   | ₩300,000<br><br><br><br>₩500,000                 |
| 3. 해난선박의 구조조사 및 구조비 산정          | 1인 1일당<br>단, 별도 구조보고서 발행시 상기종목1(선박)의 나., 다.를 적용한다.   | ₩300,000   |
| 4. 화물의 손상조사 및 손해액 산정            | 가. 현장조사<br>(1) 1인 1일<br>나. 기본료   | ₩150,000<br><br>₩400,000                         |

- (주) 1. 선박·항공 전손사고의 상기 손해사정금액에 관한 보수는 위탁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위표에 의하여 계산된 보수의 50%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해외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다. 제3종

| 손해사정금액        | 요율      | 비고 |
|---------------|---------|----|
| 5백만원까지        | ₩80,000 |    |
| 5백만원초과 1천만원까지 | 1.20%   |    |
| 1천만원초과 2천만원까지 | 1.0%    |    |
| 2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 0.60%   |    |
|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 0.30%   |    |
| 1억원 초과        | 0.1%    |    |

- (주) 대물(피해물이 자동차가 아닌 경우) 손해의 손해액 기본보수는 이 보수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종 손해사정 기본보수표를 적용한다.

[별표2] <개정 2003. 3. 7>

### 보험금 사정보수표

#### 가. 제1종

| 손해사정금액       | 보수요율                             | 기준액      |
|--------------|----------------------------------|----------|
| 1억원미만        | 손해사정 기본보수의 10%<br>(단, 기본료는 10만원) | ₩288,200 |
| 1억원이상~10억원미만 | 손해사정 기본보수의 5%                    | ₩632,500 |
| 10억원이상       | 손해사정 기본보수의 2%                    |          |

(주) 1. 이 보수료를 적용함에 있어, 산출된 보수가 차하위 구분에 의한 기준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기준액을 적용한다.

#### 나. 2종

| 구 분  | 보험금사정액<br>(단위 : 천원)     | 요 율                |                    |
|------|-------------------------|--------------------|--------------------|
|      |                         | 단독해손               | 공동해손/구조비/RDC       |
| 근무보수 |                         | ₩50,000<br>1인 1시간당 | ₩50,000<br>1인 1시간당 |
| 손해사정 | ₩25,000까지               | 사정액의 2.2%          | 사정액의 3.85%         |
|      | ₩25,000초과<br>₩50,000까지  | 초과액의 1.1%          | 초과액의 2.75%         |
|      | ₩50,000초과<br>₩75,000까지  | 초과액의 0.88%         | 초과액의 2.2%          |
|      | ₩75,000초과<br>₩100,000까지 | 초과액의 0.77%         | 초과액의 1.65%         |
|      | ₩100,000초과<br>10억원까지    | 초과액의 0.33%         | 초과액의 0.88%         |
|      | 10억원이상                  | 초과액의 0.22%         | 초과액의 0.44%         |
| 기본료  |                         | 건당 ₩400,000        | 건당 ₩400,000        |

(주) 1. 1천만원 미만의 적하보험 사정보수는 위탁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 다. 제3종

| 구 분     | 요 율            |
|---------|----------------|
| 3천만원 미만 | 손해사정 기본보수의 10% |
| 3천만원 이상 | 손해사정 기본보수의 7%  |
| 5천만원 미만 |                |
| 5천만원 이상 | 손해사정 기본보수의 5%  |

(주) 1. 이 보수표를 적용함에 있어 산출된 보수가 차하위 구분에 의한 보수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보수를 적용한다.



[별표3] <개정 2003. 3. 7>

**선임 손해사정인 여비교통비 지급기준**

| 구분                     | 지급기준       | 비고 |
|------------------------|------------|----|
| 항공임                    | 실비         |    |
| 철도임                    | 새마을호(특실제외) |    |
| 선임                     | 1등정액       |    |
| 고속버스 또는 시외버스<br>기타교통수단 | 실비         |    |
| 업무용 승용차                | 유류대 및 통행료  |    |
| 일비(식비포함)               | 30,000원    |    |
| 숙박비(1일당)               | 40,000원    |    |

- (주) 1. 대한민국내 선임손해사정인 법인의 본지점이 소재하는 동일지역(시단위 기준)의 여비교통비는 일비만을 지급한다. 단, 보험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타지역소재 조사자가 시외출장한 경우에는 상기여비교통비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2. 일비는 일수, 숙박비는 숙박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일비, 숙박비는 1일당 금액임)
3. 국외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실비를 정할 수 있다.